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9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정이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안 제3조)

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4조)

라. 특별회계 설치(안 제5조)

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3086(2023. 8. 25.)]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70호

가) 예고기간: 2023. 08. 25. ~ 2023. 09.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 사전협의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원안가결)[기획예산담당관-13025(2023. 8. 25.)]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5. 본문: 불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효율적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대상 및 종류,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주변 지역의 정의를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면 전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주변지역”이라 함은 가동·건설 중 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 (안 제3조)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지원사업 시행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은 천연가스 공급배관 통과마을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의 지원사업 종류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 제7조)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 세입·세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정자금의 회계 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금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점검을 위해 지원규모,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 함.